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9월 3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2025.11.24.) 상정, 축조심사

제8차 조세소위원회 (2025.11.30.) 상정, 심사, 의결(원안가결)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쟁청
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제1호·제5호·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17호 중 “제69조”를 “제69조 또는 제73조의5”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제5장제2절의 제목 “추가세액의 계산”을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로 한다.

제66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제6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제72조 앞의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를 삭제한다.

제72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5장 제3절 제1관(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

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

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times B) + C$$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 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 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5장제3절제2관(제7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를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의 규정에도”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

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 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times B) + C - D$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text{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times B) + C$$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제8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 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제80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으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를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로,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를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신고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내국추가세액 등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

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생 략)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 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u> <u>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u> <u>조정 입증 서류</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생 략)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u> <u>제18항제1호·제5호·제6호에</u> <u>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u> <u>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u> <u>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u> <u>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u>			

	<u>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u>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1조(정의) ①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 제69조 또는 제73조의 5----- ----- -----.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 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u>	<u>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 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u>

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
가 있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신 설>

제66조 (생략)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
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
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
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
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
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
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
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
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
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
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
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
액배분액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6조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⑦ (생 략)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신 설>

제72조 (생 략)

제73조 (생 략)

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②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72조 (현행과 같음)

제73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신 설>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신 설>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
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
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
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
한다.

<신 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
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
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
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신 설>

<신 설>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

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
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
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분
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
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
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
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
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

<신 설>

· 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times B) + C$$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
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
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
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
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
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
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
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
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
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
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
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
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
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
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
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
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

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의 규정에도 -----

-----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

-----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② -----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③ (생략)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
국추가세액배분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69조 및 제
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별)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

1. -----

-----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별) ①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산식 생략)

② (생략)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times B) + C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
들의 추가세액

$$= (A \times B) + C - D$$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
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 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
추가세액

$$= (A \times B) + C$$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
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
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
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④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

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

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
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
조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
가에 대하여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
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
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
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
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하
다.

② (생략)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 추가세액 및 내국
추가세액-----
-----.

-----.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
례) ① ----- 제
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 -----

----- 제67조
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

----- 추가세액배분액등-----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5조(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

-----.

④ ----- 추가세액배분액등-----

-----.

⑤ ----- 추가세액배분액등-----

----- 추가세액배분액등-----

-----.

제85조(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① -----

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

----- 추가세액배분액-----.

② -----

----- 추가세액배분액-----.

③ -----

----- 추가세액배분액-----

④ -----

----- 추가세액배분액-----

----- 추가세액배분액-----
-----.

⑤ -----

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

추가세액배분액등

추가세
액배분액등

추가세액배분액등

추가세액배분액등

⑥

추가세
액배분액등

추가세액배분
액등

다. ⑦ (생 략)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u>추가세액 배분액</u>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u>추가세액배분액</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u>추가세액배분액</u>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u>추가세액 배분액등</u>----- ----- ----- -----. ⑨ ----- ----- <u>추가세액배분액등</u>----- ----- ----- <u>추가세액배분액등</u>----- -----.
--	--